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51327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11. 27.

판결 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7,343원 및 그 중 13,812,566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397,34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16,397,3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5.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증금액 (변경액)	보증기한 (변경기한)	대출 은행	대출 과목	대출금
95,000,000원 (90,000,000원)	2011. 5. 26. (2015. 5. 2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대위 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 변제

1) 피고 회사는 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10.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기업은행에 89,986,925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5. 10. 26.까지 합계 76,174,359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3,812,566원이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 연 12%를 적용, 위회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584,777원이다.

다. 피고 부부의 주택 처분

1) 피고 부부는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연립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피고 부부는 2014. 10. 7.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D은 2014. 10.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자백 간주, 피고 D: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부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7,343원(=대위 변제금 잔액 13,812,566원 + 확정 손해금 2,584,777원) 및 그 중 대위 변제금 잔액 13,812,566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5. 5.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피고 부부에 대한 구상채권이 피고 부부의 이 사건 주택 처분일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위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위 처분 이전에

발생되어 있고, 2014. 10. 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10. 22.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피고 부부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D에 게 처분함으로써
피고 부부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D은 동생 부부의 어려움과 동생인 피고 B의 가정 문제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선한
마음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 부부의 총 채무금액이 3억8천만 원으로 거래가 3억
원을 초과하여 특별한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란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 그 법률행위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부부의 이 사건 주택 매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 D도 피고 부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② 그 피담보채무는 2억5,000만 원인 사실, ③ 피고 D이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한 사실, ④ 이 사건 주택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조세채권으로 압류되었다가 해제되었는 데, 그 조세채권액이 23,593,380원인 사실, ⑤ 이 사건
주택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주택 가액 3억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과 선순위 조세채권 23,593,380원을 뺀 26,406,620원은 원고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구상채권액 16,397,34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위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397,3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